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대표 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숙 자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초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례상 지원의 범위는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제한되어 있어 사립의 초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실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도의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생수가
급감하여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수업료 자율화학교라 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재정상태가 어려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교육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상태가 어려운 모든 사립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